

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

의안 번호	12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5년 9월 30일

제 출 자 : 서대문구청장

1. 동의를 구하는 사항

-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16 서대문구 예산에 편성하고자 함

2. 제안이유

-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【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·운영】 및 동법 제146조 【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】 의 규정에 의거 매년 예산에 편성 되었던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 【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】 의 개정에 따라 2016년 서대문구 예산편성 이전에 미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3. 제안근거

「지방세기본법」

제145조 【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·운영】

-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·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(이하 “지방세연구원” 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
제146조 【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】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·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발전기금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
「지방세기본법시행령」

제114조 【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】

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6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
2. 2013년 1월 1일부터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
가. 1만분의 1.5

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 【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】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4. 소요예산

(단위 : 천원)

예산과목		2015년 예산			2016년 요구(B)	증 감 (B-A)
편성목	통계목	예산(A)	결산전망			
			집행	이월		
출연금	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	8,828	8,828	0	9,057	229

4. 소요예산 산출근거

가. 출연금 ⇒ 9,057,000원

㉠ 출연금(한국지방세연구원) : 9,057,000원

- 2014년도 보통세수(구세)의 0.015%

60,379,595,000원 × 0.015% = 9,057,000원